

수해 대책 '미적'·겨울나기 '막막'...구례 수재민들 화났다

수해 100일 쫓기대회...섬진강댐 방류 책임자 처벌·피해 배상 촉구
집 한채 200만원·소 한마리 70만원 보상에 "터무니 없다"며 분통
"법 새로 만들어서라도 해결하겠다던 정부, 원인 조사도 안해" 성토

"수해가 나고 정치인 등 수백명이 다녀가고 금세 피해 보상도 이뤄질 것 같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집중 호우(8월 8일)로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잃고 살던 집에 물이 들어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에 안간힘을 쓴 지 18일로 꼭 100일이 됐다.

빨리 축사를 고쳐 떼내려간 소를 대신할 새 소를 구입하고 물이 들어찬 집을 수리해 겨울이 오기 전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주민들의 기대는 산산히 깨졌다. 정부가 책정한 송아지 구입비는 70만원으로는 300만원이 넘는 송아지 구입은 엄두도 못내고 200만원의 집 수리비용은 무너진 집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섬진강댐 방류 조절도 집중호우가 낳았는데 책임 규명도 여태 이뤄지지 않아 누구에게 하소연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주민 수백명이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더이상 정부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구례 5일시장에 모여 '수해피해 100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지난 8월 8일 5일시장의 긴박한 대피 상황을 재현하고 모든 점포에 대량 방류 책임자 처벌과 구례군·구례군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100일 넘도록 말 뿐인 정부대책과 지원에 불만을 터트

렸다.

구례 5일장에서 영업중인 상점 주인들도 1시간 동안 문을 닫고 동참했다. 이날 쫓기대회에서는 주민들이 수해 피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증언하고 재현하는 한편, 피해 현장 사진들도 전시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은 "살던 집과 상점이 물에 잠겼고 소가 떼내려가는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100일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0일 전 내린 집중호우로 130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소 2000마리가 떼내려갔다. 농경지 700ha도 침수됐다.

100일이 지났지만 50가구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130여명은 공동주거시설에 살고 있다.

추정 피해액도 수십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최고 보상액은 1세대당 5000만원이 전부다. 집 한채 보상비로 200만 원, 소 한마리 값이 70만 원, 상가 하나·점포 하나가 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게 피해주민들 목소리다.

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억울한 백성이 여기 있다고 소리도 질러봤고 국회를 찾아 개미처럼 의원들 방을 돌면서 절박하게 호소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조사는 더디기만 하고 배상에 대한 어떤 약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해 주민들은 "100일 동안 구례를 둘러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시라'고 뿌리고 간 분들의 명함



18일 오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 피해 100일을 맞아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책임자 처벌과 배상 촉구 쫓기대회를 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만 한 주먹"이라며 "법이 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수해민들은 "쓰러진 집·사업장·축사를 바라보며 '나라에서 잘못 한거니까 살게 해주겠지. 세월이 좋은 세월인데 죽어야 하겠는가'라고 서로 의지하면 버텨왔지만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고 했다.

수해민들은 "10월 말까지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던 환경부장관 말은 빈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예야 겨우 조사 원인을 규명하는 수해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 과업지시서 협의 초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후 올해 연말까지 조사용역 입찰자를 선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도 조사결과보고서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김창승 대책위 상임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배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섬진강 수해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여부 내일 결정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정에 이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

을 발표하기보다 결정을 내리는 대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씨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전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태원 빌라와 오산 토지에 대한 공매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재판부가 판단을 미뤄둔 상태다. /연합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엠넷 PD 항소심도 실행

PD 징역 2년·CP 1년 8개월 선고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PD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

고했다. 3700여만원의 추징금도 유지됐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B CP(총괄 프로듀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A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PD와 B CP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조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느끼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12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한 내 서류 제출 안했다고...입찰 제한은 위법"

기아차, 한전 상대 소송 승소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기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기아자동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전이 기아차에 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5월 이뤄진 한전의 '전기차 58대 구매' 입찰에 참여, 7월에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차례 기한 연장에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뒤늦게 서류를 냈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준비 과정에서 착오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 조달금액과 입찰금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정상적 차량 납품이 어려우니 재입찰을 검토해달라'며 연장된 기한 내 이의를 제기했다.

기아차는 이후 한전측 답변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심사서류를 냈고 '입찰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한전측은 얼마 뒤 '투찰금액 착오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할 수 없고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한 데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3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기한 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39조 2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서류를 늦게 제출, 계약 일정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입찰에 관한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